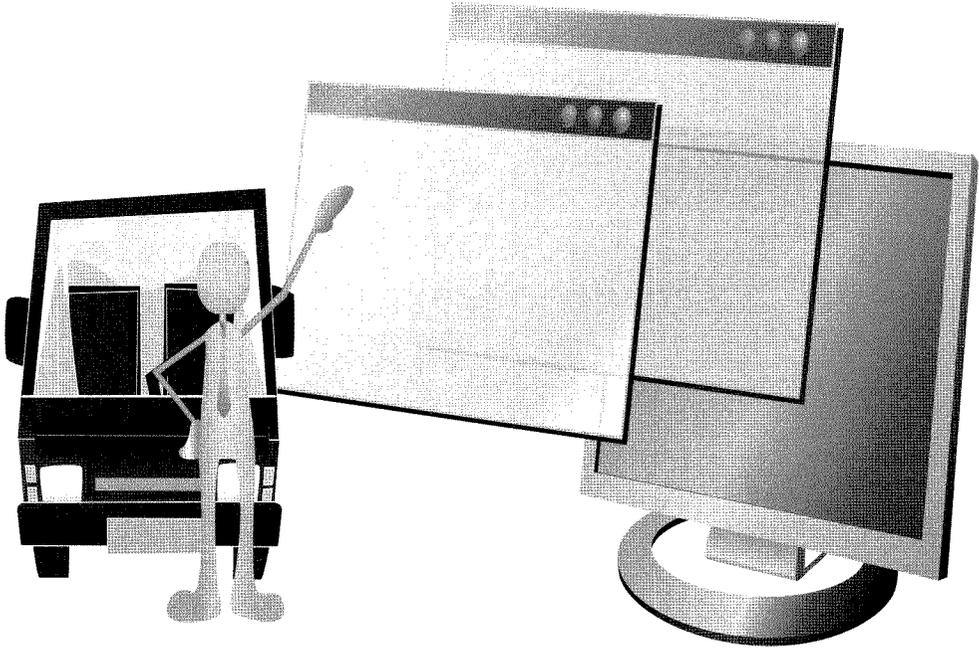




가스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 도입



한국LPG가스공업협회

국토해양부는 가스자동차의 내압용기 검사업무를 일원화하고 내압용기의 재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법률 제10721호, '11.5.24 공포)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11.11.2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천연가스(CNG/LNG)자동차는 3년~4년마다 별도로 용기 재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LPG자동차는 현행 정기검사로 용기 재검사를 같음(우리협회 의견 수용)하게 된다.

관련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 주요내용

○ 가스차량 내압용기 재검사 시행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내압용기의 재검사 신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의14부터 제57조의20까지 신설)

내압용기 재검사 시행에 필요한 내압용기 정기검사 주기, 안전기준, 검사합격 여부에 따른 조치 방법 등 세부적 사항 마련

자동차관리법('11.5.24 개정·공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제35조의8(내압용기의 재검사)</p> <p>①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4조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구조·장치의 변경을 마친 후 또는 제35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압용기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를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로 내압용기재검사를 갈음한다.</p> <p>1. 내압용기 정기검사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실시하는 검사</p> <p>2. 내압용기 수시검사: 손상의 발생,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의 훼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p>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11.11.25 시행예정)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57조의14(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등) ① <u>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국토해양 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비사업용 승용차는 4년, 그 외의 자동차는 3년을 말한다. 다만, 장착된 각각의 내압용기의 유효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내압용기의 유효기간에 따른다.</u></p> <hr/> <p>② 내압용기 재검사에 관하여 유효기간 기산은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는 제75조를, 검사기간은 제77조제2항을,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는 제77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는 “내압용기 정기검사”로, “검사유효기간”은 “내압용기 정기검사유효기간”으로, “검사기간”은 “내압용기 정기검사기간”으로 본다.</p> <p>제57조의15(내압용기 수시검사의 사유)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국토해양 부령이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에 대한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 2. 기타 차대차(車對車) 사고 등 시·도지사가 내압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자동차 소유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p>제57조의19(내압용기 재검사의 실시 등) ① <u>제57조의18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동차 검사대행자는 별표 5의8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른 상세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압축천연가스(경용 또는 혼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상세정밀검사외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압특수검사를 추가할 수 있다.</u></p>